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9. 26 선고 2023가단6194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창교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

변 론 종 결 2024. 8. 8.

판 결 선 고 2024. 9. 26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- 원고의 2024. 5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른 예비적 청구(추심금) 추가 부분은 허가하지 아니한다.

N

청 구 취 지

-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21. 12. 27. 체결한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취소한다.

2.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22. 1. 18. 접수 제7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등기’라고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[원고는 2024. 5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예비적으로 추심금 175,000,000원의 청구를 추가하였으나, 위 청구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않는다.]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관련법리

1) 민사소송에서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(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),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,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(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44416 판결,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0다28338, 28345 판결 등 참조). 그러나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(민사소송법 제263조).

나. 구체적 판단

① 원고의 당초 청구는 원고가 2018. 7. 11. C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8년제280호로 채무변제공정증서(이하 ‘이 사건 공정증서’라고 한다)를 작성·교부받은 채권자로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

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앞으로 마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(원물 반환)인 반면, ② 원고가 예비적으로 추가하겠다는 청구는 원고가 집행력이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24. 4. 30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타채15375호로 'C이 2021. 8. 3.자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경북 성주군 E 공장용지 9,082㎡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청구권 중 247,653,688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'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추심명령이 2024. 5. 2.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것인바, 이는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, 민사소송법 제263조,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허가하지 않고, 처음 소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.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와 C이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인 점, 이 사건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의 가처분 및 I의 가압류 등이 이미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,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도 G조합의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여전히 C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C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였는바, 채무자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C의 악의가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 단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8. 7. 11.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형 H이 2022. 11. 3. C의 I에 대한 2억 원의 횡령금 반환채권을 양수받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에서 원고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H이 I에 대한 C의 채권을 양수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2)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바,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.

3)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

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대구 달서구 J건물 K호 철근콘크리트조 134.97㎡ 아파트, 평택시 L 임야 600㎡, 평택시 M 임야 600㎡, 경북 성주군 N 대 334㎡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성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(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주장·입증하지 않았다).

3. 결 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수영

별지